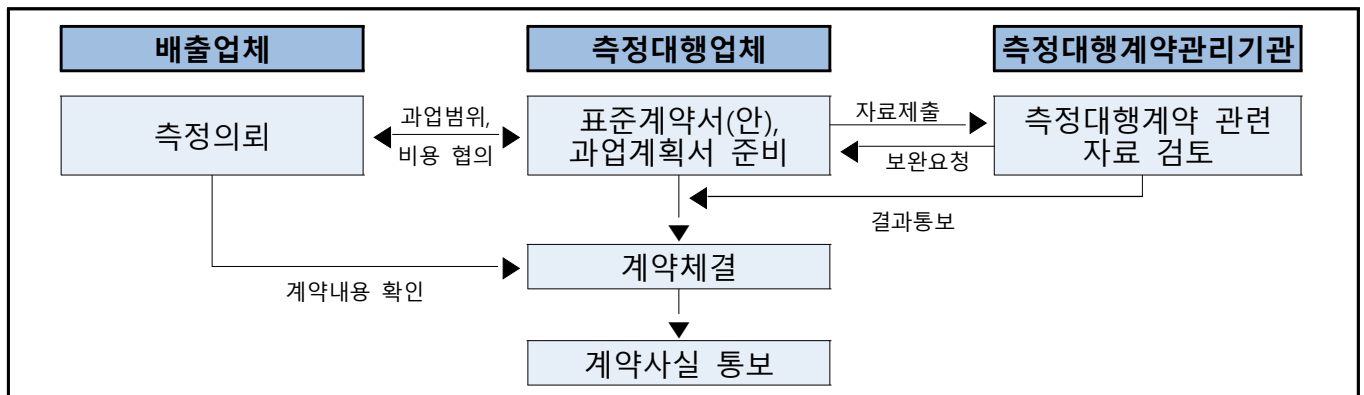


측정대행계약 자료 사전 제출기한 변경 안내(2022.8.18.부터 시행)

□ 제도 개요

- (개요) '20.3.31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'20.10.1.부터 제16조제7항에 따라 **측정대행업자**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자료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함
- '22.8.18. 동법 시행규칙 제15조3의 개정으로 계약 관련 서류의 제출기한을 명확히 함
- (제출기한)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 **7일 전까지**
- (제출처)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
 - 대기분야 : 한국환경공단
 - 수질분야 : 환경보전협회
- (제출방법)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
- (계약관리 대상 사업장) 대기·수질 1~2종사업장
- (제재조치) 계약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
 - 행정처분 :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
 - 벌칙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(시행) '22.8.18.부터 시행

□ 계약업무 흐름도



<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>

법 제16조(측정대행업의 등록) ⑦ 측정대행업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제16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법 제17조(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3호, 제4호,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6의2.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

법 제33조(벌칙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

시행령 제13조의2(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) 법 제16조제7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

1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
2. 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 및 제2종사업장

시행규칙 제15조의3(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)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 7일 전까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계획서

가. 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

나.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

2.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산출내역서 등 가격결정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)

② 측정대행업자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